

제18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5. 12. 08(화) 10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성복, 김창원, 박민정, 박 순, 심동섭, 이낙경
이웅배, 이해경, 정정주, 진철문, 황현숙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3건 4작품(조각 4)
[신규 2작품, 부결 2작품]
- ◆ 결 과 : 승인 2작품, 부결 2작품

□ 위원 발언 내용

<위원장>

- 2015년 제18차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. 금일 심사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(심의방법에 대한 거수 실시)

다수의 의견에 따라 2안 토론 후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
<위원장>
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

- 1-1번은 공모작인데 10점 가점이 부여되나요?
- 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0점 가점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.
- 궁금한게 있는데요. 공모작인 공개된 사항이니까 작가의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게 아닌가요?
- 모 언론매체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1-1과 1-2가 같은 작가인가요?
- 아뇨 다른 작가입니다.
- 서울시 심의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작가의 이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.
- 이게 모작 심의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- 네.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작가의 경력 등을 확인하겠습니다.
- 이런 하트를 설치한 작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- 1-1작품은 서울시 다른 곳에서 본 듯한 작품입니다.
- 작품 1-1, 1-2번은 똑같이 시공사인 대림 측에서 공모를 통해 IT Complex에 설치될거니까 1-1번 작품도 위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의시 의논을 해 봐야할 거 같습니다.
- 사실 하트라는 모양은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.
- IT Complex 공모시 1-1, 1-2 모두 모작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시공사인 대림측에서 2차 심사를 거쳐서 모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.
- 그럼 1-1, 1-2 모두 공모에 의한 작품인가요?
- 네. 공모였고 1-1은 이번에 처음 신청된 작품이고 1-2는 재심 사항입니다.
- 그럼 두 작품 모두 가점의 대상이네요?

-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지난번 심의 시 공모지침서 상에 결격사유 발생시 2등 당선작에게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고, 또 11.30자 심의결과 다른 작가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부결 사유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보완되서 나온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? 심의 대상이 아닌거 같은데요.
- 시공사인 대림측에서 당선작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하여 보완하여 재심의 신청이 온 사항입니다.
- 그럼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? 공모지침서에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, 또한 지난 번 심의 결과도 무시하고 같은 사람이 1주일 만에 새로운 작품이 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? 1주일 만에 만들어진 작품이 다른 게 뭐가 있나요? 피비우스씨 두 개 붙여놓은 거 말고 달라진 게 없는 거 같고 독창성도 없는 거 같은데 이 심의를 여기서 또 해야 한다는 거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.
- 알겠습니다. 우리가 하는 게 심사가 아니라 심의인데 이미 추락한 작가의 신뢰도 있을텐데 그걸 무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또 이렇게 심의가 들어온 거에 대해 저도 심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.
- 심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무한정 기회를 주거나 3번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공모의 경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
- 일반적인 심의의 경우 재심 5번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. 올해 우리가 공모작에 대한 심의를 5건 정도 했는데 1건은 조건부 승인이었고 나머지 모두 승인처리 되었습니다.
- 오늘 새롭게 법을 만들고 시행하기는 어렵고 관례대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.
-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은 남편 작품과 아내 작품이 너무 똑같고

아내의 이름으로 공모에 들어왔다는 게 문제인데요. 저는 이거에 대해 심의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. 원래 심의는 예술성이나 서울시에 작품이 설치되기에 문제가 없는 건지, 가격조건 등을 심의를 하는데 이걸 예술성에 있어서 배껴서 가져온 것인데요. 왜 배꼈냐고 하면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일 텐데 왜 그런 게 가능한지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심의위원 제도와 심의자체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작품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 뉴스화가 되고 기사화 되는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약간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. 단순히 작품을 채점해서 붙이고 떨어뜨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.

- 그전에 제가 궁금하게 있습니다. 1-2가 보완을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는 건가요?
(작품 변경사항 확인 후) 그렇다면 당선작품이 부결되어서 다시 보완 작품이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.
- 이 작품이 모작이라는 문제 때문에 심의올라오기 전에 이미 시공사에 의해 재심을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1차 심사때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이 다시 재심사에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심의 신청이 되어 지난 번 심의때에 부결이 되었습니다. 예술성의 문제라든지,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게 1주일 만에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.
- 워낙 언론에 내용이 많이 알려져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물어보았던게 공모해서 작품이 선정되서 대림에서 문제가

없으면 동일 작가에게 다른 작품을 낼 수가 있는건가요. 공모에서 선정된게 원래 당선작이지 변형된 보완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?

- 공모는 당선작이 있고 차선작이 있어서 당선작이 심의에서 떨어지면 차선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개인건설회사에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.
- 작가에게 다른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
- 이철희 작가와 작품이 같은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네요.
- 저는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와도 이런 건은 상정에 올리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요?
- 여기에 당초 공모요강이라는게 있는데요. 당선자가 결격사유가 있을시 2등으로 선정된 작품이 당선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심의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나요?
- 대림측은 한번 더 작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견입니다.
- 한번 더 작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건 대림 측의 의견이고. 지난번 심의 때 예술성결여, 모작이라는 걸 순화해서 탈락시킨 것인데 동일한 인물이 또 올린다는 건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주셔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좋겠습니다.
- 2번에 걸쳐 심의에 들어가셨던 분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. 위원들의 약력 등이 포함된 명단을 부탁드립니다.
- 말씀 안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
- 음악도 한소절만 같아도 표절문제가 되는데요. 이게 한 두번이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
- 자료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1차, 2차에서 심사를 통해 표절이 없다고 결정을 내린거니까 그 심사를 존중을 해야 하고

이 심의는 우리 나름대로 별도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.

- 거부를 하던지 채점을 하던지 결정을 해야겠습니다.
- 엄연히 문제가 있는 작품을 점수화해서 나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
- 저번에도 재심의를 올라오는게 가능할까에 대해 논의가 있긴 있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다뤄주는 것이고 우리는 점수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?
- 점수를 안 매길 수가 있나요?
- 이전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.
- 이번에 그런 사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.
-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공모지침서에 결격사유 발생시 2등에게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 2등 작품으로 재심의신청이 된 것이 아님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.
-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방식 안에서 가결 부결이라는 형식으로 점수를 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점수로 표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인거 같습니다. 의견을 충분히 점수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
- 제가 보기엔 1-1작품은 작품성이 좀 없어 보이네요. 1-2 작품은 1주일 만에 재심 신청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, 조각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 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.
- 1-1번 작품이 5억이고 1-2번이 3억인데 이런 금액으로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데요.
- 맞습니다. 요즘에 정말 좋은 미디어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1-1 같은 경우 이 금액으로 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-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점수로만 매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비고란에 조건부나 부결의견 등을 써서 의견을 내야할 겁니다.
- 1-2번 작품은 심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. 우리가 심의해야하는 작품은 기존 당선작품이지 이번 작품은 아닙니다.
- 두 번째 들어온 작품이 사실상 독창성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술성 점수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. 또한 설치금액 사용내역서상에 3억원짜리 작품인데 작가창작비가 전체 금액의 0.6%인 183만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작가 본인이 인정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.
-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 점수를 내서 우리 뜻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. 점수를 1-1번, 1-2번 작품을 내주시죠.
- 공모작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공모가산점수 10점을 결정해줄 수 있습니다.
- 공모 가산점 10점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2번 작품에 대해서는 원 공모당선작은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.
- 1-2번 작품의 작가 입장에서 그래도 공모를 통해서 온 것인데 가산점을 안 주는 거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.
- 채점기준에 공모가산점의 경우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건 작품에 대해 가산점을 준 것인지 작가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. 1-2번 작품은 공모에 당선된 원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 부여는 안 될 거 같습니다.
-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.
- 그럼 1-2가 당선작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당선작으로 보고 10점을 주는 거와 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겠

습니다. (의견제시에 대한 거수) 그럼 만장일치로 1-2의 작품에 한해 공모가산점수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- 점수는 1점단위로 가능한가요?
- 1점 단위로 가능합니다.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ENA Suite호텔에 설치될 조각 작품입니다.
- 기존 작품보다 많이 보완이 된 거 같습니다.
- 네 작품이 많이 보완된 게 보이네요..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2번 작품에 대한 채점 부탁드립니다. 다음 3번 작품입니다. 아파트에 설치되는 조각 작품입니다.
- 2번과 3번은 공모작이 아닌가요?
- 네. 아닙니다.

<채점 진행>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4개 작품 중 1-1번과 1-2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2작품은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1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